

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339
----------	------

2025년 12월 16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장
- 회부일자 : 2025년 10월 23일
- 상정일자 :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25년 11월 26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복지실장 윤종장)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는 기능이 유사한 두 개의 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기관(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및 커리어플러스센터)을 통합하여 설립된 신규 민간위탁기관으로,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취업상담 및 알선, 일자리 개발, 현장훈련, 사후지도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.
- 나.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,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법인 등을 대상으로 본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,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

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

나. 센터개요

- 위 치 :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(대치동)
- 규 모 : 연면적 975.64m²(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3~5층)
- 지원시설 : 사무실, 교육장, 상담실, 강당 등
- 위치도



- 장애인 일자리 지원 : 취업장애인 사후관리, 장기고용전략 수립 등
 - 기타 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 등
- ※ ’13.8.7 준공된 행복플러스센터(연면적 1,669.48m²) 건물관리 위탁 포함

사.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장애인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해 장애 특성별 맞춤형 취업상담·알선, 구인업체 발굴, 사례관리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,
-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케 함이 보다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

아. 소요예산 : 2,719백만원 (2026년)

자. 심의결과 : 적정(‘25년 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2항(장애인 고용촉진 추진)
-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 제3항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예산편성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III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임영미)

1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'25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커리어플러스센터의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두 기관을 통합하여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일자리센터」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¹⁾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위해 제출되었음.
- 집행기관에서는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커리어플러스센터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해, 두 기관을 통합해 장애인 일자리 총괄기능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자 함.

<표> 기존사무와 신규사무 비교

구 분	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	커리어플러스센터	장애인 일자리센터(안)
위치	강남구 도곡로 416(대치동), 3~4층 (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)	강남구 도곡로 416(대치동), 5층 (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)	강남구 도곡로 416, 3~5층
운영	(사)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	(사)전국장애인부모연대	공개모집 (신규위탁)

- 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
 -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 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 -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구 분	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	커리어플러스센터	장애인일자리센터(안)
단체 위탁 기간 근무 인원	'23.1.1~'25.12.31.(3년)	'24.1.1~'25.12.31.(2년)	'26.4.1 ~ 28.12.31.
지원 대상	센터장 등 23명 15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	센터장 등 14명 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발달 장애인	센터장 등 30명 서울특별시 거주 증인 15세 이상 등록장애인
사업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취업상담, 취업 · 사업체 개발 및 사후관리 · 취업전 현장훈련 · 맞춤형 특화 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담 및 취업연계 ·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인턴십 · 발달장애인특화사업(사서, 우편) · 장애인 취업 업체개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인 일자리 연계 : 취업기관 간 정보·인력 연계, 직업능력평가 등 - 장애인 일자리 개발 : 장애인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구인업체 개발 등 - 장애인 일자리 지원 : 취업장애인 사후관리, 장기고용전략 수립 등 - 기타 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 등
시 지원 예산	1,683백만원(25년 기준)	2,458백만원(25년 기준)	2,719백만원 (26년 기준)

2

동의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추진경과

-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²⁾ 및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조³⁾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로, 장

- 2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(직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, 직업능력 평가, 직업 적응훈련, 직업훈련, 취업 알선,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 ·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.
- 3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· 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장애인의 구직 역량을 강화하는 취업상담·알선, 교육, 현장훈련,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립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기관임.

※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

- 운영방식 : 민간위탁 ※ '23. 1. 1.~'25.12.31.(3년)
- 수탁기관 :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(대표 이건희)
- 위치 : 강남구 도곡로 416(대치동),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
- 규모

구 분		면적 (m ²)	시설 내용
용 도	4층	224.88 m ²	센터장실, 작업평가실, 휴게실, 교육장, 자료실
	3층	224.88 m ²	사무실 (상담실 2실 포함)

※ 행복플러스센터 : 지상6/지하1(대지 570.75 m²/건축면적 279.87 m²/연면적 1,669.48)

- 조직 구성 : 센터장 외 1국 4개팀 23명
- '25년 예산 : 1,854백만원 (시설 총예산)
 - 민간위탁금 1,667백만원, 법인전입금 10백만원, 민간위탁사업비 177백만원(사고이월 포함)
- 주요 사업
 - 장애인 일자리 연계 : 취업기관 간 정보·인력 연계 및 직업능력평가 등
 - 장애인 일자리 개발 : 장애인 능력 및 특성에 맞는 적합한 구인업체 개발 등
 - 서울지역 장애인 일자리 공공 및 민간기관 안에서 중심 역할 수행
 - 「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」 재산 관리

- 서울시는 2009년부터 민간위탁의 형태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었으며,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음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·장애인,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,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.

<표>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경과

구 분	위탁기간	수탁기관	선정방법	비고
민간위탁	1년9개월 ('09.4.1.~'10.12.31.)	사)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	신규위탁	
민간위탁	3년 ('11.1.1.~'13.12.31.)	사)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	재위탁	
민간위탁	3년 ('14.1.1.~'16.12.31.)	사)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	재계약	
민간위탁	3년 ('17.1.1.~'19.12.31.)	사)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	재위탁	
민간위탁	3년 ('20.1.1.~'22.12.31.)	사)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	재계약	
민간위탁	3년 ('23.1.1.~'25.12.31.)	사)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	재위탁	

-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‘25년 4월 실시한 종합성과평가 결과, 82.64점을 획득하였으며, 주요 개선요청사항으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, 교육 실적의 균형있는 관리와 목표 설정 필요 등이 지적됨.

<표>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종합성과평가 주요 결과('25.4월)

구분	우수사항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조직개편과 직무개선으로 이직률이 감소 추세 -사업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추진체계와 평가,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 -장애인 일자리 창출: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일자리 마련 및 취업으로 연결된 성과 달성 -성과 홍보와 확산: 성공사례 발굴, 성과자료 제공 등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 기여

구분	개선요청사항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업무 프로세스 개선 필요: 교육 실적의 균형 있는 관리와 목표 설정 필요 -예산 관리 보완: 예산 목표와 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 있음 -택시운전기사 사업: 고령 장애인 증가에 대응해 취업 목표 확대 필요 -바리스타 교육과정: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IT·프로그래밍 등 다른 직종 성과지표도 개발 필요

구분	조치결과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현) 조직관리 운영시스템화 모색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'일자리사업의 극대화'를 목표로 한 현 조직의 효과성 분석 ② 1국 4팀의 적합성 분석 ③ 2026년 조직관리에 반영 ④ 각 팀별 유기적 업무순환도 마련 * 현) 사업계획서 작성시 예산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기록관리함 - 감액된 예산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개량적 목표 설정함 * 택시운전기사사업의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계획시 3~5개년의 실적추이 및 고용 시장 흐름을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 예정(2026년) *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미래형 직무 개발 및 운영 모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업 그 자체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범사업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, 고용가능성을 진단하고, 이를 장애인 고용에 적용할 계획임(2026년)

나. 커리어플러스센터 추진경과 및 운영현황

- 커리어플러스센터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 및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조 외에도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⁴⁾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로,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적성에 기반해 그들의 취업과 자립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4)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※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현황

- 운영방식 : 민간위탁 ※ '24. 1. 1.~'25.12.31.(2년)
- 수탁기관 : (사)전국장애인부모연대(대표 윤종술)
- 위치 : 강남구 도곡로 416(대치동),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5층(61.75㎡)
- 조직 구성 : 센터장 외 4개팀, 총 14명(센터장 1, 직원 13)
- '25년 예산 : 2,458백만원
 - 인건비 : 730백만원, 운영비 : 46백만원, 사업비 : 1,682백만원 등
- 주요 사업
 - 발달장애인 훈련·고용 지원인력 양성·관리 및 업체 개발 관리

- 커리어플러스센터는 2017년 성동구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되어 서울시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하였으며, 2021년부터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해 옴.

<표>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추진경과

구 분	위탁기간	수탁기관	선정방법	비고
민간위탁	3년 ('21.1.1.~'23.12.31.)	사)전국장애인부모연대	신규위탁	
민간위탁	2년 ('24.1.1.~'25.12.31.)	사)전국장애인부모연대	재계약	

- 기존 발달장애인 직업지원서비스는 직업재활시설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, 직업재활시설의 신규설치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지속적인 확충에 한계가 있었으며, 직업재활서비스는 보호고용 중심으로 발달장애의 특성상 민간 일자리로의 전이가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가 지적되어 옴.⁵⁾

5) 김현승·이의정(2020). 『제2기(2021~2025)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(안) 수립 연구』. 서울시복지재단

- 커리어플러스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, 발달장애인에게 ‘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고용 지원’을 위한 일환으로, ‘先배 치·後훈련’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주요 목표로 운영되어 옴.
- 커리어플러스센터는 25년 7월 종합성과평가에서 83.04점을 받았으며, 개선요청사항으로는 센터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발굴, 구직자 개발에서 구직역량 진단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구인기관 연결 노력 강화 필요성 등이 지적됨.

<표> 커리어플러스센터 종합성과평가 주요 결과 ('25.7월)

구분	우수사항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직 운영상 신규제도 및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조직체 운영과 전산화 작업으로 실적 관리업무 회의일정 관리 등을 자동화하고 있음 - 24년부터 직원들의 고용유지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법인으로부터 총당하고 있는 측면과 AI 활용을 통한 시간외근무를 줄이고자 노력한 측면은 긍정적임 - 본 센터의 미션과 부합하는 측면에서 사무 인원으로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으며, 본 센터와 고용관계인 장애인의 고용율이 30%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

구분	개선요청사항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계획서에 커리어플러스센터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발굴(바리스타 이외에의 새로운 직군 발굴 필요) - 구직자 개발에 있어 구직의 역량에 대한 진단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구인 기관에 연결시켜주는 노력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, 구직자의 원하는 직무와 가능한 직무가 일치되는 성과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음 - 향후에는 센터 강점과 외부 기회를 살리는 SO 전략에 집중하고, 개선 방안들이 차년도 중점과제와 직접 연관되도록 하는 연결성은 보완할 필요가 있음

구분	조치결과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8.20일 전직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29개 신규 직군을 선정해봤으며,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들을 선발하여 26년 위탁사업에 반영할 예정 - 향후 객관화된 지표 개발을 목표하고 있으며, 이를 레이더차트를 활용하여

시각화해 해당 성과를 분석해 나갈 예정

- SO(강점기회)전략과 개선 방안들을 26년 사업에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

다. 신규기관 설립 및 기능통합의 적정성

-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모든 장애 유형을 대상자로 하는 데 비해, 커리어플러스센터는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,
- 두 개의 사무 모두 구직의사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연계해주고, 나아가서 장애인 능력 및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임.
 - 24년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취업자 현황 428명 가운데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장애) 이 206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커리어플러스는 213명의 구직자 개발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<표>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24년도 직종별-장애인유형별 취업자 현황

(단위: 명)

연번	구분	계	지체	뇌병변	시각	지적	정신	자폐성	언어	청각	신장	호흡기	뇌전증
	계	428	65	35	15	159	52	47	4	37	9	1	4
1	상담직	3	1	1	—	—	—	—	—	—	1	—	—
2	생산직	9	—	1	2	3	—	1	—	2	—	—	—
3	서비스직	184	32	12	9	83	16	7	2	20	3	—	—
4	사무직	78	21	13	2	13	10	6	2	3	4	1	3
5	전문, 기술직	7	—	1	—	—	1	3	—	2	—	—	—
6	판매영업직	0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7	운전운송 배송직	12	7	2	—	—	—	—	—	2	1	—	—
8	단순노무직	75	1	4	2	38	21	2	—	6	—	—	1
9	예체능직	60	3	1	—	22	4	28	—	2	—	—	—

- 특성과 기능이 유사한 두 기관에 대한 통합요구 운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.
- 2020년 커리어플러스 센터의 최초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시에도 기존의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.
- 2024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발간한 『서울시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』에서는 커리어플러스센터는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,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이용자의 차별성이 없고, 기관의 역할 및 기능이 유사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.
- 2024년 서울시 평가담당관에서도 상반기 기관별 성과평가 결과에서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기관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

성이 낮고, 대상자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
- 또한, 2025년 예산담당관에서 실시한 커리어플러스 재정사업 평가 결과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자립지원은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의 영역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,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중복된 기능이 있다고 지적함.
- 이처럼, 기존 두 개의 기관이 수행해 온 장애인 취업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서비스 중복을 해소하고, 장애인 고용 지원체계를 제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기관 설립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라.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법적근거 및 필요성

- 민간위탁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근거로 ‘각종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’로서,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임.
- 해당 업무는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두 기관을 통합해, 광역 차원에서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및 자원 배분을 총괄·조정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하는 것으로, 해당 직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

로 판단됨.

- 2025년 제7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본 안건은 조건부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, 당시 제시된 의견은
 - 서울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인력과 예산 투입안 마련
 - 조직구성에서 특정 장애인층 분류 사용 재검토

이었으며,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하여, 최종적으로 심의결과는 적정으로 수정됨.⁶⁾

- 집행기관에서는 「공공일자리→ 직업재활 → 민간취업」으로 이어지는 서울형 직업사다리 모델을 구축, 경력 사다리 연계를 위한 장애인일자리센터(컨트롤타워) 설치·운영, 일자리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민간일자리 매칭 강화 및 발굴확대 등의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수정해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.

3 종합의견

- 동 사무는 장애인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상담, 직업능력평가, 장기고용을 위한 사후관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사무로,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.
-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커리어플러스 센터는 모두 장애인의

6) 조직담당관-10881. ‘2025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조건부적정 안건 후속조치 결과 보고’ . 25.10.6.

직업재활과 일자리 연계를 담당해 왔으며,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, 커리어플러스는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그 기능의 중복이 지적되어 옴.

- 따라서, 기존 두 기관이 수행해온 장애인 취업지원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서비스 중복을 해소하고, 장애인 고용지원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. 나아가, 향후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총괄기관으로서, 서울시 내의 장애인 일자리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기관 통합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한 전환관리계획 및 기존 커리어플러스센터가 수행해 온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직무 설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.
- 또한, 기관의 통합 추진과정에서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 승계 및 직무 재배치등을 고려해 조직의 안정성과 현장 전문성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.
- 나아가, 기관 통합이후에도 취업률 중심의 단기성과 뿐 아니라 장기고용 유지율, 취업의 질 평가 등을 포함한 종합적 평가체계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3339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10월 18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는 기능이 유사한 두 개의 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기관(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및 커리어플러스센터)을 통합하여 설립된 신규 민간위탁기관으로,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취업상담 및 알선, 일자리 개발, 현장훈련, 사후지도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
- 나.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,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법인 등을 대상으로 본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,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

나. 센터개요

-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(대치동)
- 규모 : 연면적 975.64m²(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3~5층)
- 지원시설 : 사무실, 교육장, 상담실, 강당 등

- 위치도



다. 운영인력 : 30명(센터장 1, 사무국장1, 팀장 3, 일반직원 25)

라. 위탁기간 : 2026. 4. 1. ~ 2028. 12. 31(2년9개월)

마. 수탁자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바. 위탁사무

- 장애인 일자리 연계 : 취업기관 간 정보·인력 연계, 직업능력평가 등
- 장애인 일자리 개발 : 장애인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구인업체 개발 등
- 장애인 일자리 지원 : 취업장애인 사후관리, 장기고용전략 수립 등
- 기타 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 등

* '13.8.7 준공된 행복플러스센터(연면적 1,669.48m²) 건물관리 위탁 포함

사.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장애인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해 장애 특성별 맞춤형 취업상담·알선, 구인업체 발굴, 사례관리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,
-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케 함이 보다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

아. 소요예산 : 2,719백만원(2026년)

자. 심의결과 : 적정('25년 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2항(장애인 고용촉진 추진)
-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 제3항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예산편성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정태영 (☎2133-7965)